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 of 26

목 차

- 제 1장 총칙
- 제 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 제 3장 안전보건 교육
- 제 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 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 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 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제 8장 상벌

프로세스 책임		안전환경관리부		작성 자	공 도 현
결 재	구 분	검 토	확 인	승 인	표준원본 관리팀 등록 확인
	팀 명	안전환경관리부	안전환경관리부		☐ 관리본 ☐ 비관리본
	직 위	주임	부장	대표이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등록확인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제,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배포장소 (관리책임: 시스템담당)
	0	2022. 08. 01	ISO45001 인증 추진에 따른 제정	
	1	2023. 04. 05	법적 사항 및 상벌, 안전보건 평가 내용 수정	
	2	2023. 08. 01	ISO14001 통합에 따른 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 of 26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당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및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동법 시행령(이하“령”),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및 노동부 고시(이하“고시”)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작성하여 “홍우산업(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은 물론 회사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 정신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보건관리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물, 기계, 설비, 작업방법 등에 잠재하는 재해사고 발생요인의 제거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2 재해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종업원의 부상, 사망, 신체장애 또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3.3 사고

위험요인이 현실화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3.4 유해요인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종업원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5 산업재해

종업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환경관리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6. 사고 예방 책임과 의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3 of 26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7. 안전관리조직의 책임과 권한

7.1 대표이사

- 1) 대표이사는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을 규정하고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제공 보장
- 2) 안전보건경영 방침, 목표의 승인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제·개정, 경영검토보고서 승인
- 4) 현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승인

7.2 본사 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

- 1) 안전보건경영 방침, 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배포, 이행확인
- 2) 안전보건관련 회사표준과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일치하도록 업무수행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제·개정 및 경영검토보고서 검토
- 4) 본사 안전교육·점검계획 및 실시결과 계획
- 5) 본사 안전보건 협의체 참석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동 참여·지원
- 6) 안전관리자 인사배치
- 6) 현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검토
- 7) 재해발생시 대책 수립 및 지원
- 8) 최초 RISK 관리 실행 관리 및 검토승인
- 9) 본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협조 및 현장 안전관리 지원, 교육

7-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10) 작업의 중지권 사용에 관한 사항
- 11)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지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의 승인
- 12)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 ISO 실행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 1) 현장 안전보건경영 목표 승인
- 2) 본사의 안전보건 활동(매뉴얼, 절차서, 규정, 지침서, 업무지시 등)의 준수
- 3) 현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종별 안전시공계획서 승인
- 4)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제공
- 5) 현장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 승인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4 of 26

- 6) 현장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에 의한 신속한 보고
- 7)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부적절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승인
- 8) 현장 안전보건활동 관련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조직 구성 및 문서 승인
-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사내 절차서, 지침서 등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직무를 수행

7-4. 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7) 작업지휘자의 교육 및 지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의 기록 보관 등
-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작업계획서 등의 작성)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 ISO 실행 및 측정/기록을 하여야 한다.

- 1) 현장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실행 및 추진담당자별 달성측정 기록
- 2)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 안전시공계획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검토
- 3) 현장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 검토 및 실시
- 4) 현장 재해발생시 안전관리 상별지침에 의한 응급조치 및 재해자 후송
- 5)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부적절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검토
- 6) 현장 안전보건활동 관련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작성 및 검토
-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 지침서 등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직무를 수행

7-5.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5 of 26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 ISO 실행/검토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1) 본사 안전보건경영방침, 목표와 일치되도록 현장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주기적 검토
- 2)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 안전시공계획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작성
- 3) 현장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 작성 및 준비
- 4) 현장 재해발생시 안전관리 상별지침에 의한 재해조사,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보고
- 5)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부적절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작성
- 6) 현장 안전보건활동 관련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작성 및 검토
-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사내 절차서, 지침서 등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직무를 수행

7-6. 보건관리자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5) (1)목부터 (4)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15)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ISO 실행/검토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6 of 26

7-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 대상현장 : 공사금액이 120 억원(토목 : 150 억)이상인 현장
- 2)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1 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있다.
 - (1) 근로자 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 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립장)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 인 이내의 근로자
 - (4) 사용자위원으로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 사용자위원으로서의 안전관리자 1 인
 - (6) 사용자위원으로서의 보건관리자 1 인
 - (7)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3) 회의 등(시행령 제37조)
 -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 나. 출석위원
 - 다. 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 라. 기타 토의사항
- 4) 직무 및 심의, 의결사항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 5)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가.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 나.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 다 기타 방법
- 6) 관계법령 이외의 기타 관련 사항은 근로자협의 및 참여 규정(HW-SHP-541)에 따른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7 of 26

7-7.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 대상현장 : 공사금액이 120 억원(토목 : 150 억)이상인 현장
- 2) 구성
 - (1)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회의 및 운영
 - (1)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2)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4) 직무 및 심의, 의결사항
 -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5)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 (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 (3) 기타 방법
- 6) 관계법령 이외의 기타 관련 사항은 근로자협의 및 참여 규정(HW-SHP-541)에 따른다

7-8. 작업지휘자

- 1) 당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가.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8 of 26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4) 중량물의 취급작업(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등)
 - (5)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작업 지휘자는 당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한다.

7-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시)

- 1)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1) 위촉대상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지역대표 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다.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2) 업무범위

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마.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바.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자.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차.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9 of 26

제 3 장 안전·보건 교육

8. 안전보건 교육

8-1 교육 구분 및 실시 방법

1) 신규채용자교육(최초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 교육대상 :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 (2)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 (3)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특별교육

- (1)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 (2)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이상)
- (3)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1) 교육대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건설장비운전자 등)
- (2)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가.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이상(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이상, 특별 교육시 면제)
 - 나. 특별 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3)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 정기교육

- (1)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
- (2)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3) 교육내용 :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0 of 26

5) 관리감독자 교육

- (1)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 (2) 교육시간 : 연 16시간 이상(인터넷 교육 가능)
- (3) 교육내용 :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 (1) 교육대상 : 물질안전보건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근로자
- (2)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MSD교육 시 신규,변경,정기 교육 같음 가능)
- (3) 교육내용 :
 - 가.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라. 적절한 보호구
 - 마.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1)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 (2) 교육시간 :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교육시간 이수(신규 및 보수 교육)
- (3) 교육내용 :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교육 내용 이수

8-2 교육 실시자

- 1)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지정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2) 건설안전기술사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4) 관리감독자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포함)
- 6) 산업보건의
-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8)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1 of 26

8-3. 기록 보존

- 1) 교육 내용, 참석자 서명날인, 교육사진 등을 첨부하여 교육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4. 그 밖의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HW-QESHP-721)에 따른다.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9. 작업장 안전관리

9-1. 안전관리 계획서

- 1) 안전관리자는 현장 개설 초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노사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2)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계획은 전 부서 및 전 근로자에게 통고하고 일정기간 게시한다.

9-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1) 법령이 정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착공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2) 최대 지간길이가 50 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 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5) 깊이 10 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9-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1)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사용의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는 다음각 호와 같다.

-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2)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함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할 것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2 of 26

(3) 회전기계의 물리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3)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설비,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2)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 (3) 건설기계장비 등

4)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하여야 한다.

9-3.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안전인증)

9-4. 자율안전확인 신고

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자율안전확인제도 대상 기계·기구는 시행령 77조를 따른다.

9-5.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단기
- (2) 크레인 (정격 하중이 2 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3) 리프트
- (4) 곤돌라
- (5) 원심기(산업용만해당)
- (6) 압력용기
- (7)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 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한다)
- (8) 프레스
- (9)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10)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1)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 킬로뉴턴(KN)미만은 제외한다]
- (12) 컨베이어
- (13) 산업용 로봇

2)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 항목,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안전검사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사용 중지표 부착과 동시에 수리, 개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사용중지표를 제거하고 가동한다

4) 연간 안전검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검사 결과의 조치 및 기록보존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검사 년 월 일
- (2) 검사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3 of 26

- (3) 검사부분
- (4) 검사결과
- (5) 검사자의 성명
-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9-6. 안전수칙

-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전 작업장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일반 안전수칙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 2) 안전관리자는 위험 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3)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사항은 안전수칙 지침(HW-SHI-821), 일반안전규칙(HW-SHI-820)을 따른다

9-7.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 1)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질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는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 2) 기타, 고압 가스저장소 및 고압가스 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인화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 3)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위험물관리 지침(HW-ESHI-813), 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HW-ESHI-814)에 따른다

9-8.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1) 중대해해 발생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될 때
- 2)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사항 지침서(HW-SHI-825)에 따른다

9-9. 안전표지

- 1)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설물, 장비, 작업장 및 기타 위험장소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반드시 안전표지(금지, 경고, 안내, 지시표지) 및 안전수칙 등을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 2) 현장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3) 안전표지는 항상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설치, 이동 및 철거는안전관리자의 승인에 의한다.

9-10. 표준안전작업지침

- 1)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 2)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 3) 근로자는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4 of 26

9-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 대상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및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 2) 도급인(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3)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다.

9-12. 안전점검 및 순찰

- 1) 안전순찰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 3)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자체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 4)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 5) 안전점검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보고서를 해당 협력업체 또는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협력업체 또는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즉시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자)에 통보한다.
- 6) 시정조치보고서의 발부
 - (1) 안전보건담당자의 시정요구서는 안전환경관리팀장의 승인을 얻어 발부한다.
 - (2) 개선담당 책임자는 그 요청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즉시 개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개선담당 책임자는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개선계획 검토가 필요하여 시일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서를 발부한 담당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4) 시정조치 보고서에 발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지속적 개선 규정(HW-QESHP-1031)에 따라 발부한다.
- 10) 안전점검일지의 작성
각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안전점검일지에 매일 기록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5 of 26

9-1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다음 각호의 작업을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획내용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다.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 나.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 사전조사 내용

- 가.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2)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밸브·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 마. 덮개판·플랜지(flange)·밸브·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 바. 시료의 채취
-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 차.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6 of 26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성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 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바.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사.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아.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자.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차.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1) 사전조사 내용

가.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지장물 조사)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 작업계획서 내용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1) 사전조사 내용

가.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2) 작업계획서 내용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7 of 26

8) 교량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 나.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1) 사전조사 내용

- 가.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작업계획서 내용

-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마. 발파방법
- 바. 암석의 분할방법
- 사. 암석의 가공장소
-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 사전조사 내용

- 가.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2) 작업계획서 내용

-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나.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8 of 26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계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 나. 작업량
- 다. 작업순서
-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13) 입환작업(入換作業)

(1) 작업계획서 내용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 나. 작업량
- 다. 작업순서
-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9-14. 작업 허가서의 제출

1) 작업허가서 실행 시기

- (1)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사업장내에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2) 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1) 발급

- 가. 작업허가서의 작성은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가 작성한다.
- 나. 보충작업이 수반되는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 여부를 검토한 후 발급한다.

(2) 확인 점검

-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확인 점검을 한다.

(3) 승인(허가)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승인을 한다.

(4) 입회

- 가.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3) 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 허가

- 가. 용접·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
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9 of 26

(2) 일반위험작업 허가

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 (나) 정전작업허가
- (다) 굴착작업허가
- (라) 방사선 사용 작업허가
- (마) 고소작업허가
- (바) 중장비 사용 작업허가 등

(3) 보충적인 작업 허가

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

4) 허가서의 보존 등

- (1)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2)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처법 관련 서류 5년 보존)
- (3)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5) 기타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P - 94 - 2021 안전작업허가 지침 (2021. 12.)에 따른다

9-15.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 1)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검토, 보고한다. 다만 원도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다면 이를 따른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0 of 26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10. 작업장 보건관리

10-1. 근로자 건강 진단

- 1)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 2) 소음, 분진의 작업이나 강력한 진동발생 등 특정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3) 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결과표를 따로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 유해물의 취급절차

- 1) 취급부서 및 취급자를 정하여 취급토록 한다.
- 2)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는다.
- 3)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위험물관리 지침(HW-SHI-813), 유해화학물질관리(HW-SHI-814)에 따른다

10-2. 보호구의 지급

-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 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보호구의 지급은 신규채용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4) 보호구는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지급하며 보수 또는 폐기할 것을 구분, 필요한 조치를 한다.
- 5) 보호구 지급대장은 지급 시 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한다.
- 6) 그 밖의 기타 사항은 보호구 지급 관리 지침(HW-SHI-817)에 따른다

10-3. 질병자 등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 1) 법 제138조에서 정한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
- 2)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3) 고혈압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분	최고혈압 기준	취업기준	비고
고혈압	140 이하	정상근무	- 혈압측정 - 신규자 교육 시 2회 측정 중 낮은 수치 적용
	170 미만	소견서 제출 후 취업 여부 결정	
	170 이상	취업 불가	

- 4) 고령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분	취업기준	비고
일반근로자	만 65세 이하	단, 근로자의 심신 상태가 부적당한 상태로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반장, 안전관리자, 시공자가 협의 후 근로투입을 금지할 수 있음.
작업반장 및 장비운전원	만 65세 이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1 of 26

5) 경력사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분	취업기준	비고
일반근로자	동종경력 6개월 이상	단, 해체/고소작업 등 고위험작업의 투입은 금지함.

10-4. 보건표지·보건수칙 및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표지

(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2) 보건 수칙

(1)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10-5. 작업환경측정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 취급공종의 신규투입)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2) 반기에 1 회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3)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킨다.

4)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5) 측정자, 측정일자, 측정대상,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보존한다.

6) 측정결과는 근로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리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에 전파토록 한다.

7)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2 of 26

제 6 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1-1. 사고조사 및 보고

1) 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 (1)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기계를 정지시킨다.
- (2) 피해자를 재해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로 구출한다.
- (3)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3)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긴급사항의 경우 작업장 내 인원을 대피시킨다.)
- (4) 현장을 보존하고, 재해자를 응급조치 한 후 구급차로 후송토록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즉시 본사로 보고한다.
- (5)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지체없이 즉시 보고한다.
- (6) 그 밖의 사항은 사건 사고 조사 규정(HW-SHP-102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HW-QESHPR-1031)에 따른다

2) 안전사고 발생 보고

- (1) 안전사고 발생시 본사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그 밖의 사항은 사건 사고 조사 규정(HW-SHP-102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HW-QESHPR-1031)에 따른다

3)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1)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분석하고 재해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3)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 (3) 그 밖의 사항은 사건 사고 조사 규정(HW-SHP-102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HW-QESHPR-1031)에 따른다

4) 기록 및 유지 관리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5) 그 밖의 사항은 문서화된 정보 관리 규정(HW-QESHP-751)에 따른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3 of 26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

12-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1) 최초 위험성평가 : 착공 전후 1개월 이내
- 2)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 1년 이내
- 3) 수시 위험성평가 : 월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장 변경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12-2.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감소대책 수립

- 1)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규정 (HW-SHP-612)에 따른다.

제 8 장 상벌

13. 포상 기준

13-1. 창립 기념일 안전현장 시상

- 1) 매년 창립기념일(2월 5일)에는 직전년도 무재해 현장중에서 최장의 무재해시간달성 현장을 최우수 안전현장으로 지정하고 상장과 상금(1,000,000원)을 수여 한다.

구분	상금	지급기준
최우수	1,000,000	1. 공사기간 10개월 이상
우수	500,000	2. 매출액 20억이상

13-2. 무재해 시간 달성에 따른 시상

- 1) 무재해 시간에 도달하면 현장에서는 실적 달성을 본사에 무재해 인증 신청서(HW-안전-033), 작업일보 등을 보고하고, 보고일로 부터 1개월 내에 본사에 달성 확인 후 상금과 상장을 지불한다.

구분	무재해 시간(hr)	상금	중복 횟수	비고
1단계	100,000	300,000	1회 인정	※무재해시간 = 직원+근로자+장비원의 무재해 근무시간 합계
2단계	200,000	500,000	2회 인정	
3단계	400,000	1,000,000	3회 인정	
4단계	700,000	2,000,000	4회 인정	
5단계	1,000,000	3,000,000		

13-3. 우수근로자 시상

- 1) 분기별 우수근로자 추천서를 받아서 CEO 특별 점검 및 교육시 안전우수상과 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4 of 26

14. 징계 기준

14-1 안전사고의 가중에 따른 징계

1) 인사사고

구분	사망	중상해 (3개월 이상)	경상해 (3일~3개월 미만)
불안전 행동	감봉 1개월	경고	-
관리감독 소홀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경고
안전시설 결함 또는 미설치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견책(시말서)

2) 물피사고

구분	물적피해액		
	1,0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불안전 행동	견책(시말서)	경고	-
관리감독 소홀	감봉 1개월	견책(시말서)	경고

※ 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고 중복에 따른 가중 처벌

구분	내용	비고
1	경고 2회 = 견책(시말서)	
2	견책(시말서) 2회 = 감봉 1개월	
3	감봉 3개월 이상 = 본사 대기 또는 면직	

4) 징계 위원회 소집

구분	사고발생 기간	징계위원회	비고
1	1월 ~ 6월	7월 중	감봉 3개월 이상 해당자 발생시 즉각 징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7월 ~ 12월	익년 1월 중	

5) 징계의 대상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리감독자(총무 및 공종별 공사팀장, 공사 담당 직원, 전 관라자 대상)

(3)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가. 법정 안전교육 또는 건강진단의 미 실시

나. 안전보호구의 미 지급

다. 안전시설물의 결함 또는 미설치

※ 안전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설치 및 결함의 수정을 지도, 조언한 경우는 제외

6) 소명 : 징계의 대상자는 사고 발생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인 과실에 대한 정확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5 of 26

15. 현장 안전관리 등급

NO	점수	등급	비고
1	95점 이상	S	
2	90점 이상	A	
3	85점 이상	B	
4	80점 이상	C	
5	80점 미만	D	

16. 현장 안전평가 산정표

NO	항목	A(비율)	B(수식, 내용)	점수
1	재해율	50%	$1 - \{(\text{사고건수} / (\text{연출력인원} / 365\text{일})) * 100\}$	A*B
2	안전점검평가	20%	각종점검 등 (해빙기, 하 절기, 동절기) = (현장 안전점검 점수 합계/횟수)/100	A*B
3	현장 안전보건 관리업무수행평 가서	20%	평가 점수	A*B
4	사고 처리 비용 당사부담	10%	A : 비용 100만원 이하 = 1 B : 비용 1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0.7 C : 비용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0.3 D : 비용 2000만원 이상 = 0 ※ 산재 등 = -0.2/건당	A*B
합계		100		

17. 기록 관리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규정 (HW-QESHP-751)에 따른다.

기록명	관리부서	양식번호	보존기간
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평가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6	5년
안전관리평가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7	5년
안전관리계획서(현장)	안전환경관리부	HW-SHI-823	5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06	5년
우수근로자 추천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8	5년
무재해 인증 신청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3	5년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지정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9	5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운영관리 규정

표준번호	HW-SHP-811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6 of 26

18. 관련 규정

1. 교육훈련규정
2. 위험성평가규정
3. 사건사고 조사 규정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규정
5. 근로자 협의 및 참여 규정
6. 목표관리 규정
7. 지속적 개선 규정
8.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

19. 관련 지침서

1. 안전대 사용지침 및 안전대책 지침서
2.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 지침서
3. 위험물관리 지침서
4. 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
5. 중량물 취급관리 지침서
6. 중기차 운행 안전 관리 지침서
7. 보호구 지급 관리 지침서
8. 작업 환경 관리 지침서
9. 안전수칙 지침서
10. 소방관리 지침서
11. 일반안전규칙 지침서
12. 장비 관리 지침서
13. 안전관리계획서
14. 특별점검
15. 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사항